

비판으로 패망예방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섭리를 깨닫고 바르게<친친/정의> 살아야 한다

父母愛之 喜而不忘, 父母惡之 勞而不怨, 父母有過 諫而不逆.
見利思義, 舍生取義 / 道非高遠 人自不行 <孔子, 孟子/栗谷 李珣>

君父有不義

국가(官)나 부모가 불의(不義)함에도

臣子不諫諍

국민(民)과 자식이 침묵(盲從)한다면

則亡國敗家

국가(國)나 가정은 패망(敗亡)한다네

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용감한 저항이 필요하다. 인간은 육체적 생활뿐만 아니라 도덕적 생존도 중요하므로 도덕적 생존조건 중에 권리에 대한 주장은 자기보존의 의무로써 그 권리 포기는 도덕적 자살이며, 자신만이 아닌 같은 상황에 있는 이웃의 권리·공동체의 권리까지 침해받게 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의 포기가 된다. < 권리를 위한 투쟁, - R. 에링 >

민주주의와 공론

Principled Support for Democracy & Public Opinion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 MAJORITY RULE IS THE FIRST AND FOREMOST PRINCIPLE OF DEMOCRACY.
인심지소동연자(人心之所同然者) 위지공론(謂之公論) 공론지소재(公論之所在) 위지국시(謂之國是) --孟子/朱子の 진리(理)+정의(義)+합人心의 栗谷의 公論觀.

AGREEMENT TO DIFFER

의견의 불일치는 어쩔수 없음을 인정하고,

COMPROMISE

소수자를 위하여 양보와 타협에 진력하되,

MAJORITY RULE

의사결정은 과반수-다수결에 따라야 한다.

<1.헌법 제49조>국회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와, <국회법 제54조/109조> 위원회<법안심사소위 포함>는 과반수출석과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규정을 <100%합의처리>란 오만한 특권의식 꿈수로 민주주의 대원칙/과반수 의결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민생법안 등 <1만개가 넘는> 법안을 <합의처리>안된다는 핑계로 자동폐기시킨 <제19대>국회는 반민주/반법치/최악의 국회가 되었다

<2.원칙>상기(上記)한 바커<ERNEST BARKER, 1874~1960, 영국 캠브리지대 정치학 교수,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권위자>의 민주주의 3대원칙만이라도 지혜롭게 지켜 나간다면, 중지(衆智)와 공론(公論) 그리고, 루소의 General Will이 반영되는 바람직한 법치주의, 민주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공론>중요정책/입법/공적의사 결정에 대해, 일반적 여론 조사로는 하버마스(HABERMAS)가 우려한 여론의 이중성,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스탠포드대 피시킨(JAMES FISHKIN)교수는 조사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상반된 견해 등 균형적 정보를 제공한 후 조사한 공론(公論)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정의 철학과 지표

(사유(四維, 禮義廉恥)는 선진적인 법치사상과 정치·경제철학과 부국강병책으로 춘추시대에 약소국이었던 제나라(齊, BC 1123~211)를 패국(霸國)으로 만든 법가이자 정치가 관중(管仲, BC ?~645)이 저술한 관자(管子, 부민(富民)·치국(治國)·경신(敬神)·포교(布教)와 패도정치를 역설)의 국정철학으로, 21C 현대의 정치철학과 공동체 발전원리로도 뛰어났다.)

道德性	예 禮	倫理性
(도덕성)		(윤리성)
正義性	의 義	合法性
(정의성)		(합법성)
清廉性	염 廉	經濟性
(청렴성)		(경제성)
改革性	치 恥	創意性
(개혁성)		(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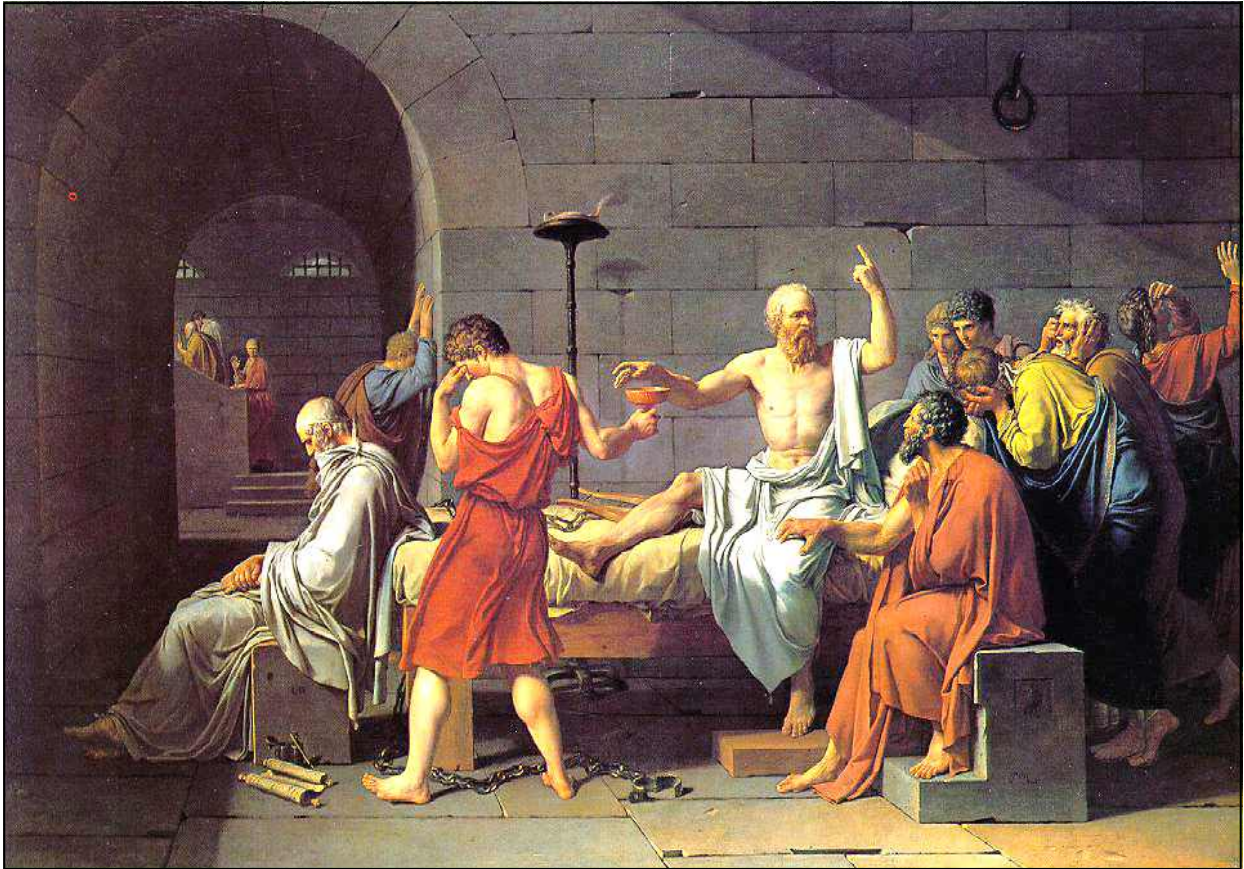
판단과 평가의 기준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이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기조인 '공정사회구현' 에서 '공정' 이란 본래 '공명정대' 의 축약
으로 공무수행과 삶의 판단(평가)기준인 바, 우리는 공익성(公), 투명성(明), 정당성(正), 효율성(大)의 종합적 안목보다는
투명성이나 효율성 등 어느 면만 고집하는 편견이나 포폴리즘으로, 사회통합과 발전 등 더 큰 가치를 상실하곤 하였다.)

公益性	公	衡平性
(공익성)		(형평성)
透視性	明	民主性
(투명성)		(민주성)
正當性	正	합理性
(정당성)		(합리성)
價値性	大	效率性
(가치성)		(효율성)

법을 지켜라(준법)

“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온 내가 나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법을 함부로 어길 수는 없지 않는가? 선량한 시민이 악법을 지키는 것은 **교활한 시민이 정당한 법까지도 지키지 않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네.” -Socrates



괴테(Goethe, Johann Wolfgang von, 1749.8.28~1832.3.22)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적인 예지까지 터득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 하이네는 그를 가리켜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천재”라고 예찬했고, T.S.엘리엇은 “시인이자 보다 현인”이라고 경외했다. 시인·화가·극작가·정치가·과학자·법률가(변호사), 대문호... 괴테의 관심분야는 다양하다 못해 실로 초인적이었다. 문학사에 우뚝 선 존재였음은 물론, 2,700여점의 그림을 남긴 화가였고, 26년간 바이마르 궁정극장을 이끌며 모짜르트의 오페라를 280번이나 공연한 무대연출가였으며, 바이마르 공화국 총리에까지 오른 정치가였다.



"It is better for you to suffer an injustice than for the world to be without law. Therefore, let everyone submit to the law."

무질서와 혼란(무법천지)보다 **악법(Unrecht)**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 Goethe,안정성(질서)과 정의 - Radbruch

正義의 女神像

법의 생명인 형평성·공정성을 상징하는 저울과, 인권과 정의를 실현시키는 공권력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재판당사자에 관한 편파적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눈을 가렸다. <左 독일 프랑크푸르트 뢰머광장>



‘법의 목적은 평화요, 그 수단은 투쟁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불법적 권리침해에 대한 합법적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권리포기는 도덕적 자살일 수 있다),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다’ <루돌프 폰 예링 1818-1892>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점평가를 하여 왔을 뿐이고, 둘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2일 이상 결석 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5~31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결국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얽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이며, 당연한 권리이다 》

지렛대 시민운동

국회 4대기능 회복을 통한 일류국가건설!

—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이론과 실제 —

I.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

1.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의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란 민주국가의 국민대표 최고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감현장과 방송(유선·케이블 TV)·인터넷·언론방송을 통해 지켜보면서 주도 면밀히 분석·계량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총의에 기반 의정(국정감사)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촉진하면서 국민들이 대표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작은 힘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야물찬 시민운동의 꽃입니다.

2. 국정감사모니터링의 종류

(1)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감사현장(여의도 국회본청에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를 받는 기관의 대회의실—예컨대 대법원의 대회의실 등)에 직접 들어가서 감사위원(국회의원) 감사활동의 충실성, 성실성, 감사방식 및 감사태도와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2) 국회본청 화상모니터링

국회본청 화상모니터링은 여의도 국회 본청(푸른색 돔) 건물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서 마련한 모니터실에서 폐쇄회로 TV를 통해 당일 국회본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인터넷 의사중계 모니터링

인터넷 의사중계 모니터링은 국회사무처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을 통해 국회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의 내용을 생중계하고 있는데,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assembly.webcast.go.kr)에서 당일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화상회의록을 통해 여러 번 상임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다시보기’ 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회 밖에서 진행되는 감사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국회방송(NATV)모니터링

국회방송(채널 4)에서는 국정감사시간 중(기간 후에는 녹화 중계)에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에 감사내용을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하고 있는 바, 중요한 국정감사 현장을 생동감있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국회방송의 일주일 방송시간표가 방송전주 금요일에 국회(www.assembly.go.kr)의 공지사항에 공개됨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해당 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국정감사를 생동감있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언론·방송을 통한 모니터링

언론·방송을 통한 모니터링은 방송 3사와 MBN, YTN 그리고 언론·신문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나오는 국정감사의 내용을 모니터 위원이 구독하거나 시청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비교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당일의 중요한 감사내용을 방송·언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을 비교·분석할 수 있어 언론모니터링을 겸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6) 정당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

현대는 정당제 국가로 정당의 역할이 국정감사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원내 정당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당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 정책위 브리핑 및 정책위 정책제안 자료, 일일국감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전문성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 피감기관(국감대상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정부는 국민에게 열린 정부를 추구하면서 국정감사자료를 피감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홈페이지를 찾아 국정감사 자료를 잘 공개하고 있는지, 어떤 교섭단체(의원)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8) 개별 국회의원 홈페이지(의원 블로그, 페이스북 등) 모니터링

개별 국회의원 홈페이지 모니터링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보통 최소 16명에서 최대 31명)의 홈페이지를 알아보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질의와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는지를 매일 매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3. 국정감사(의정)모니터링의 목적

(1) 국회 4대 기능의 회복·강화에 기여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예산통제기능과 정부견제기능 등 국회 4대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격려하고자 합니다.

(2) 충실한 국정감사활동(의정활동) 유도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부활한 국정감사제도(1988년 부활후 첫실시)의 의의와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하에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복을 위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3)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국정감사활동(의정활동) 평가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국회의원의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전제한 NGO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전문성있는 평가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들을 격려하

는 데 있습니다. (포지티브 운동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격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충실하고 건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함)

(4) 국정감사활동(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국회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2000년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법률에 의해 국정감사 공개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회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5) 시민교육·시민운동의 정책자료 개발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국회의 국정감사활동을 통해 얻어진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과제 수행현황과 문제점을 적시·신속하게 파악하여 국가발전과 나라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교육 및 시민운동의 정책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6) 민주시민·학생의 정치학습의 장

민주시민·학생의 정치훈련 학습의 장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인 바,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무보수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정치과정을 체험하고 훈련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4.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정체성

(1)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정체성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적십자사의 이념과 같이 편향된 정치적 목소리를 자제하고, 정치적 중립노선을 지키면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노측도 사측도 아닌, 생산자편도 소비자편만도 아닌, 오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정의와 양심에 따르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자유와 권익수호·증진에 있음과, 정당한 법에 의한 지배로 누구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게 함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중앙부처 국감은 물론 세종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등 전국각지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제작을 맡은 시민기자단을 포함한 현장모니터위원과 국회방송, 국회의사중계를 비롯하여 언론·방송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위원 등 1천여명이 넘는 모니터위원들이 전원 자비(무보수)로 충실한 모니터링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공정한 평가지표로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최종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모니터단의 자체 모니터자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질의자료, 보도자료 및 자체평가, 피감기관의 수감결과, 설문조사기법 활용, 사이버 국정감사활동, 언론의 보도내용 등도 함께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단의 국정감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많은 언론의 논조에 기초가 되는 신뢰적 영향을 주었고, 다른 기관의 국감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연대성

국정감사모니터단은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모니터단 출범식 이전부터 이미 각 시민·사회단체에 연대 공문을 발송하여 연대제의로 많은 단체들이 연대를 하고 있으며, 연대를 하지 않은 단체에게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협력,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연대 활성화는 시민운동 방법의 요체로서, 정책평가를 더욱 더 세련되고 정교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교육 분야의 국감에서 결코 교원단체나 교육단체의 의견만이 전문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없으며, 학교환경분야, 교육행정분야 등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루어져야 더욱 세련된 정책평가의 결과가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연대로 인하여 정책평가가 아닌 성실도 평가밖에 되지 않는다는 폄하성 주장은 시민운동 특히 모니터단의 현실과 노하우를 모르는 탁상공론적 또는 악의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분야의 NGO연대도 실효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II.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개관

1.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헌법 제61조 제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등

2. 국정감사제도의 특징

(1) 대상범위의 포괄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감사를 행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2) 감사실시의 정기성

정기국회전 30일 이내, 합의에 의해 정기국회 내 실시가능

(3)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

(4) 국정감사의 공개원칙

(5) 강제성

3. 국정감사의 주체와 대상, 시기와 장소

(1) 주체

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체는 국회가 됩니다. 다만, 국정감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규정(국감조2 ①)하고 있습니다.

(2) 국정감사 대상기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광역시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등이 주 대상이고, 이외에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사용되고 있는 곳은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3) 국정감사의 대상범위

- 입법사항
- 재정사항
- 행정사항
- 사법사항
- 국회내부사항

(4) 국정감사의 시기와 장소

- ① 실시시기 (국감조법 제2조, 정기국회 전)
- ② 실시시기의 변경 (본회의 의결)
- ③ 감사기간
(30일 이내, 상임위원회별, 현행법 기준)
- ④ 감사의 장소 (국회 상임위 회의장 또는 현지)

4. 국정감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실효성보장

(1) 실시방법

- ①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 위원장(또는 감사반장)은 감사활동의 개시를 공식 표명하고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의 취지, 감사위원회의 사명감, 수감기관의 성실성 등을 강조
- ② 증인 등의 선서
 -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승낙한 경우)은 반드시 선서를 하여야 함(증감7①②)
 -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안내(증감7③)
 - 위원장의 선서방법 안내
- ③ 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 기관장의 수감에 따른 인사와 소속간부 소개
- ④ 보고 및 질의·답변
 - 업무현황보고 청취
 - 의원의 질의(일괄질의 및 일문일답식 질의) 및 수감기관장 등의 답변
 -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청취,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함.
- ⑤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 등 위원장의 강평
 - 감사종료선언

(2) 실효성 보장제도

- ① 수감기관 등의 수인의무
- ② 동행명령제도
- ③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④ 검찰에의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 ⑤ 시정 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의무
- ⑥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

III.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실제와 방법론

1. 국정감사모니터위원의 선정 및 기본 자세

(1)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모니터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현장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좌석 등의 여건관계로 일정한 제한을 두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2) 국정감사모니터위원의 자격요건

- ① 건전한 이념과 정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사 선호하는 정당이 있더라도 여·야당이나 좌·우 이념을 떠나 공정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하며,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②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맡겨진 임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③ 국정감사기간 중 적어도 하루(보통 10시간 내외)는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위해 국정감사 진행시간(보통 10시~저녁) 및 준비·왕복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별도임)
- ④ 국정감사모니터링은 무료 자원봉사활동이므로, 적어도 하루 한두끼의 식비(국정감사장에서 무료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및 교통비 등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⑤ 국정감사모니터위원은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활동이나 국정감사 대상기관(피감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정보·지식을 갖추면 더욱 좋습니다.
- ⑥ 우리 모니터단에서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 국정감사장에도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의 절차상 자신의 성명과 직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 모니터링 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국정감사모니터위원 선정절차

- ① 공개모집절차 또는 회원·협력단체 그리고 NGO의 추천에 의해 국정감사NGO모니터위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출범식 및 모니터교육에 참여한 인사 중에서 현장모니터링위원을 선정합니다.
- ②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을 하기 전에 필히 국회본청 모니터링실에서 1회 이상 사전 모니터링과 지도를 받은 후 현장모니터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③ 현장 모니터위원은 신청자 중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하루종일 모니터링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청자

중에서 해당 상임위의 당일 감사와 관련된 전공을 가진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희망하는 위원이 많을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서로 양보와 협력의 원칙에 입각해 선정한 다음에 국회(해당 상임위원회 및 경위실)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④ 국회 본청 모니터실 화상모니터링 신청자는 모니터링을 희망하는 날짜의 2~3일 전에 인적사항과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 보내 주시면, 취합하여 국회본청 출입을 위해 사무국에서 국회 경위과에 출입인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⑤ 국회 인터넷의사증계를 통한 사이버모니터링 및 국회방송을 통한 국회방송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와 모니터링 시간을 사무국에 알리고 모니터링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⑥ 피감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보통 20여개 내외)을 미리 사무국과 상의하여 정한 다음 모니터링 활동하면 됩니다.

(4) 모니터위원의 자세 《선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선서문 참조》

우리 모니터단의 국정감사모니터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서·숙지하면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우리는 국정감사모니터위원으로서 여·야, 좌·우에 편향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각종 정파에 줄서기 등을 하지 않는다.

② 우리는 충실하고 공명정대하게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임하고, 국감모니터를 기화로 단체나 개인의 사적이익을 꾀하지 않는다.

③ 우리는 막중한 책무와 사명감으로 국감모니터과정에서 될 수 있는 한 침묵을 지키며, 복장·자세 등 품위를 유지한다

④ 우리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부득이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늦어도 24시간 전에 연락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우리는 국감 현장 모니터위원으로서 국정감사의 처음부터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빠짐없이 모니터링한다.

⑥ 우리는 국감현장에서 입수한 자료와 모니터링 보고서(질의응답요지의 속기록포함)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공동사무국에 제출한다.

⑦ 우리는 상임위원회나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현장보존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며 즉시 본부에 연락을 취한다.

⑧ 우리가 이상을 위반할 시에는 모니터위원 해촉,

회원단체 제명, 법적책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2.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의 중점 —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국정감사모니터링은 국정감사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고 국정감사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공정한 잣대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국정감사 시정조치·요구사항 충실점검 여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국회의원)은 각 상임위 소관부처별로 다양한 의견개진과 함께 시정조치요구를 하였고, 정부는 이행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안과 비슷한 사안 중 개선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면밀한 연구·검토’ 등의 답변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감사위원들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2) 피감기관의 주요 개혁과제·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점검 여부

피감기관의 주요 개혁·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개혁·정책과제에 대해 긍정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에 속하는 바,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히 점검·지적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3) 피감기관의 예산남·전용, 방만 경영 사례 지적 여부

피감기관의 예산 남용과 전용의 문제, 방만경영의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인이 되며, 예산을 남용하는 공직자, 예산을 전용한 공직자는 국민의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국정감사는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직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중요한 대정부 통제수단인 바, 감사위원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4) 피감기관의 법령일탈, 무책임행정 사례 지적 여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요 그 핵심인 법치국가

이므로, 피감기관의 행정 및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하위법령 등이 법률에 위반되어 제정·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무책임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은 국정감사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인 바, 감사위원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5) 피감기관의 현안사항에 대한 국민의혹 해소 여부

지난 1년 동안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접해 본 다양한 현안 사항 중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거나, 국민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국정감사를 통해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민의 대리인인 감사위원의 책무인 바, 이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6) 충실한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여부

정부에서는 보통 매년 7월에 차년도(다음해) 정부의 예산규모를 발표합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이러한 요구내역이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예산심사의 결과를 수집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바, 이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7) 충실한 법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여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실하게 심사하여 국민복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할 임무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바, 이러한 법안의 심사자료를 제대로 챙기고 현장에서 이러한 법안의 입법취지 및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감사위원이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8) 국정감사의 충실한 출석 및 성실한 질의 여부

국정감사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대정부 통제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로써, 감사위원의 성실한 출석과 충실한 질의 여부를 점검합니다.

(9) 감사위원의 지역구 챙기기·직역이기 발언 여부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전체 국민의 이익증진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장래 선거를 의식하여 지역구 챙기기 발언 및 자신이 소속된 직역(職域)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감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10) 피감기관의 ‘모르쇠, 버티기’ 답변 여부

피감기관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수많은 배석인원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고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모르쇠(알지 못함, 보고받지 못함 등등)’ 답변이나 ‘버티기’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보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타 더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관찰사항을 참조합니다.)

3. 현장(국회본청 화상)모니터링의 방법

(1) 국감모니터링 준비요령

① 자신의 전공·소속 NGO의 성격과 평소 자신의 알고자 했던 상임위원회(16개 상임위원회)를 결정합니다 (단, 국정감사 현장의 참여여부는 모니터의 희망을 반영하여 공동사무국에서 조정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②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위원회를 클릭하면 위원회의 역할, 기능, 소관기관 그리고 구성원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자료실에서 해당 위원회의 이슈와 관련 쟁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국정감사 계획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사전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미리 알아 국정감사 시작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현장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하루 종일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의사를 문서로 공동사무국(법률소비자연맹 등)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에 방청을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현장 국정감사 모니터의 경우 복장은 정장차림으로 하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배너에서 모니터관찰사항과 출석체크 양식 등을 보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감사를 받는 기관)에 대해 사전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⑥ 현장 국정감사시 갖추어야 할 사항은
- 복장을 품위있게 합니다.

- 노트와 볼펜, 샤프연필, 지우개 등 기본적인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합니다.
- 해당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의 주요이슈 사항을 점검합니다.
- 상임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의원들의 면모를 살펴 봅니다.
- 피감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피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합니다.
- 국감시작 시간(보통 오전 10시) 30분 전에는 국정감사장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2) 국감모니터링 참관요령

- ① 국정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구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의 소지는 청사 출입규정에 의해서 출입증과 교체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신분증 교환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소속임을 밝혀야 합니다)
- ② 대체로 국정감사 현장에 가면 출입이 용이하도록 사전에 업무협조가 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조금 기다리시면 원활하게 참관을 할 수 있는데, 국정감사 시작 전에 국정감사장에 도착하여 미리 좌석을 잡고 대기하면 국정감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월하며, 국정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하기도 편리합니다.
- ③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진행순서와 상임위 위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속기식으로 적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질의의 취지와 답변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④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휴식시간(점심시간이나 정회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이탈·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⑤ 해당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 관련 자료는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수집하여 총괄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국정감사모니터링은 가능한 경우 3인상 복수로 편성하여 운영할 것이지만, 혹은 1인의 출입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더 큰 사명감으로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 ⑦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등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자료는 피감기관이나 상임위 관계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보여주어서도 아니됩니다.
- ⑧ 되도록 침묵하면서 자료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감사위원(국회의원)의 보도자료나 피감기관 자료를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모니터링은

수월해집니다.)

- ⑨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준비를 하고, 모니터링 관찰사항을 빈틈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3)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문자, 카톡 보고요령

- ① 시기 : 국회의외 지역·지방에서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정감사 시작전, 오전 모니터링 후 점심시간, 오후 모니터링 후 저녁 시간에 국정감사에 대한 상황을 알려 주시고, 휴식 시간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문자, 카톡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알려 주실 내용(국감현황 보도자료용)
 - 국정감사장에 참여한 총인원수(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국정감사에 결석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 국정감사의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 국감에서 일어나는 절차적 문제점
 - ※ 의원들간의 다툼이 있었는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 피감기관과 의원과의 다툼 등 방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등
 -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사항은 무엇인가?

(4)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수집 요령

- ① 국정감사장에 도착하면, 국정감사장 옆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아가 의원들과 피감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는 국감모니터위원들이 수집하여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숫자만큼 수집합니다
 - 매일매일 한 의원당 1개 이상의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국회 1층에 기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복도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놓여져 있으며, 각 정당의 사무실 앞에도 관련 보도자료가 놓여져 있으므로 모니터링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보도자료를 제 때에 수집하면 모니터링을 하기에 매우수월합니다.
- ② 국감장에서 국정감사 관계자들, 즉 피감기관 공무원 및 상임위 위원 보좌관들에게 국정감사NGO 모니터위원임을 밝히고, 정중히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 보좌관들이나 피감기관에서 질의자료나 현황보고자료 또는 답변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정중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부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메모식으로 적어서 평가에 반영하면 되고, 불필요하게 다툼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③ 혹시라도 피감기관의 담당직원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필요하면 국회의원의 개인비서관들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④ 피감기관의 자료는 피감기관의 공보실에 찾아가 문의하여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피감기관의 공보실에도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⑤ 피감기관에서 국감자료의 운반을 위해 주는 보자기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총괄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위원회별로 정리하여 분석될 것입니다.)

(5) 국감모니터 보고서의 작성요령

① 국감모니터 보고서는 첨부자료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올려져 있는 보고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함)

② 국감모니터 보고서는 정확성이 생명이므로 본대로, 들은 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보고서의 양식은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④ 국감모니터 일시를 기재합니다. 일시를 적을 때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시각과 종료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국감일반 현황에는 출석의원 명수를 적고 의원들이 출석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리를 비운 시간도 체크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결석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명과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⑦ 국정감사의 핵심이슈사항에는 의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을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고, 특히 질의사항은 국감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는 내용을 지적한 것이 있으면 적으면 됩니다.

⑧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질의/응답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의 취지와 답변의 취지를 자세히 적고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한 의원의 반응은 매우 중요한 평가자료이므로 이를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⑨ 피감기관의 서면답변 목록과 자료는 되도록 수집하고, 그 목록을 기재하여 총괄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⑩ 모니터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견란을 자세히 적어 주시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추천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모니터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상대평가를 하여 추천을 해 주시면 되고, 지적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점요인이 많은 의

원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6) 현장모니터링시 기타 대처요령

① 국정감사장에서 혹시 명함교환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 양해를 구하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사무국, 본인이름과 02-523-8760-7번 연락처를 알려 주면 됩니다. 명함을 받고도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에티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물음을 받는다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모니터링을 하러 왔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물음을 받았을 때에는 말없는 웃음을 보내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이가 구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③ 피감기관 직원 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꼬치꼬치 묻는 분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분을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가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온 모니터위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있을 때에는 국회모니터실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로서 다룰 필요가 전혀 없으며 미소 가득한 얼굴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④ 점심식사시간에 식사가 제공되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해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것이 때문에 국민께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국감정보를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식사시간에 제공된 메뉴도 적어 놓으면 통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국회본청에서 하는 모니터링활동은 두 가지가 있어서 혼동스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모니터실에서 영상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원회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회에 통보된 인원만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두가지 모두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국회 본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위과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 경위과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으면 위원회 회의장은 고사하고, 국회본청 안으로 들어 오기도 힘듭니다. 두가지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 기타 모니터링 (재택병행 가능)의 방법

(1) 개별 국회의원 홈페이지 모니터링 활동

- ① 개별 국회의원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를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는데,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검색하면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가 나오고, 국회를 검색한 다음 메인 화면에 있는 ‘위원회’를 클릭하여 위원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국 책임자나 담당생님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결정하거나, 사무국에서 전공에 맞춰 위원회를 지정해 줄 수 있음)
- ②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의 소개를 보면 상임위원의 구성현황이 나와 있고, 국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국회공보’를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석현황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활용)
- ③ 위원회 구성 중 위원명단을 클릭하여 위원들의 프로필과 함께 개인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 ④ 개별의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신속히 올려 놓았는지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 등을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내용의 전문성 등은 가능한 정도로 모니터링을 하지만, 전문평가단이 있으므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⑤ 한 위원회당 소속위원이 적게는 16명에서 많게는 31명의 의원으로 위원님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매일매일 비교·정리를 하면 됩니다.

(2) 국회 인터넷의사중계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

- ①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홈페이지에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의사일정이 안내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정감사 일정을 참고하여(국회 본청에서 하는 국정감사만 모니터링이 가능함) ‘인터넷 의사중계’에 가서 해당 국정감사를 화상모니터링과 같이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 ②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모두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상회의록’을 클릭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달력에서 지난 ‘월 일’을 찾아 가면 지난 국정감사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소속위원의 좌석배치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배치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③ 모니터링 방법 및 기재 사항 등은 국회본청 화상모니터링과 같이 하면 됩니다.

(3) 정당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

- ① 정당민주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 매일 어떠한 성명이나 논평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국민관심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자유 형식으로 매일 매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 ② 먼저 정당의 이름을 검색하여 정당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배너를 클릭해 보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③ 정당에서는 대변인 논평이나 원내대표단 논평 등 하루에도 여러 번 논평을 발표하거나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알리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④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당의 입장을 다른 정당과 비교하면서 분석도 합니다.
- ⑤ 정당 홈페이지에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자료가 올려져 있는데, 이를 참고하셔도 되며, 특히 정책위원회의 자료는 잘 정리하여 놓으면 좋습니다.
- ⑥ 정당의 대표나 주요 당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해 봅니다. (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4)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

- 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②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홈페이지에서 관심있는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다운받아서 상임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할 감사대상기관을 알아 봅니다.
- ③ 감사대상기관의 홈페이지에 가면 국회관련정보 공개라는 코너가 있는데(있는지 없는지도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상임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리고 피감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이 올려져 있고, 국정감사를 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올려져 있습니다.
- ④ 각 피감기관(약 15~30개 정도 될 것임)의 홈페이지를 매일 매일 들어가서 이와 같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국정감사를 한 후에도 결과를 올려놓지 않는 기관이 있으면 그러한 기관의 기관장은 누구인가를 살펴봅니다.

(5) 언론방송을 통한 모니터링 요령

(총괄사무국인 법률소비자연맹 시민학생언론방송 모니터단에 문의)